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688

발의년월일 : 2020년 7월 13일

발 의 자: 서윤기, 김동식, 박기재, 정진철,

김기대, 김제리, 봉양순, 임만균,

정재웅, 임종국, 양민규, 이정인,

유정희, 박기열, 오현정, 전병주,

이상훈, 김화숙, 황인구, 장상기,

오중석, 최 선, 채인묵, 장인홍,

이태성, 추승우, 이동현, 전석기,

노식래, 노승재, 김경영, 김희걸,

권순선, 문병훈, 김수규, 김광수,

유 용, 송도호, 최영주, 문장길,

최정순. 홍성룡. 김경우 의원(43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 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용료 반환규정을 정함(안 제8조제2항).

나. 이용자의 행위 및 이용의 제한규정의 범위를 변경함(안 제9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한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이용료) ① (생 략)	제8조(이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2
기획하거나 전시관 대관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개최하는 특정 전시, 공연, 행사	
등에 대해서는 전시관을 이용하	
는 시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으	
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다만,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한 때에는 이용료를
	<u>반환한다.</u>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행위 및 이용의 제한) ① (생	제9조(행위 및 이용의 제한)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②
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u>.</u>
1. <u>술에 취한 사람</u>	1. <u>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u>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	<u><</u> 삭 제>
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